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법 빈대용 살충제 제조·수입·판매 중단요청

1. 귀 제조·수입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감염병예방용 및 보건용 살충제(이하 “살충제”)**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안전성, 효과·효능, 용법·용량 등을 확인(승인) 받은 후에 제조·수입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집단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하고 기존 살충제의 저항성(내성) 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저항성이 덜하다고 알려진 디노테푸란(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함유 8개 살충제(불임)를 지난 11월10일에 빈대 용도로 긴급 승인한 바 있습니다.
 4. 긴급 승인된 디노테푸란 함유 살충제는 모두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로 「감염병 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며, 긴급 승인된 제품을 가정용인 ‘보건용 살충제’로 제조·판매하거나 제품을 희석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승인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시·광고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조에 따른 제조·수입 금지,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및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명령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불법제품 유형>

-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국립환경과학원)받지 않은 빈대 살충 주장 제품
 -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모리, 파리, 바퀴로만 승인받고, 빈대 살충 주장 제품
 - 빈대용으로 기승인되었거나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를 보건용(가정용)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희석하여 보건용(가정용) 등으로 판매 등
- ※ 주장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문구, 표 또는 그림으로 광고하거나, 제품의 매뉴얼, 안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불임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빈대 살충제 목록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제조·수입업체, 보건용살충제 제조·수입업체,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장)

주무관

정창영

환경연구관

김혜진

과장

전결 2023. 11. 13.

권병철

협조자

시행 화학제품관리과-1327

접수

우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6827

팩스번호 044-201-6786

/ mpol49@me.go.kr

/ 비공개(5)